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56
----------	------

2022. 6. 21.(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년 6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6월 3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6월 14일

-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 · 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가.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를 확대·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시행일 : 2022. 1. 28.)  
됨에 따라,

- 위 법령에서 위임한 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기준·비율 및 수량 등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의규정 변경 및 신설(안 제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 설 확대(안 제6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신설(안 제7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수량 확대(안 제9조제1항)
- 급속충전시설 의무설치 규정 변경(안 제9조제2항)

###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의 개정에 따른 “총주차대수”, “기축시설”, “공공기축시설”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을 규정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영”이라 한다) 총주차대수 50개 이상 갖춘 시설에 대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영 제18조의5 참고)<sup>1)</sup>

---

1)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안 제7조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범위에서 규정함.(영 제18조의6 참고)<sup>1)</sup>
- 안 제9조는 충전시설 설치 수량 등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수량 범위에서 규정함.(영 제18조의7 참고)<sup>2)</sup>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예고('22. 4. 29.~'22. 5. 19.)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충전 및 주차시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개정 2022. 1. 25.>

<이하 생략>

1) 제 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하 생략>

2) 제 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생 략>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하 생략>

- 금년 시행된('22.1.28.) 영 부칙 제4조, 제5조, 제6조에<sup>1)</sup>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충전시설 설치기준은 영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22.7.27. 한) 조례를 개정해야 함.
-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반영해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소관부서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와 충전시설 편의사항 개선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1) 영 부 칙 <대통령령 제32361호, 2022. 1. 25.>

제4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의 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 시 · 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하 생략>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① 시 · 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하 생략>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① 시 · 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하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 등

#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56
------------	------

제출연월일 : 2022년 6월 3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시행일 : 2022. 1. 28.)됨에 따라,
- 위 법령에서 위임한 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의 설치대상·기준·비율 및 수량 등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의규정 변경 및 신설(안 제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확대(안 제6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신설(안 제7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수량 확대(안 제9조제1항)
- 급속충전시설 의무설치 규정 변경(안 제9조제2항)

### 3. 의안전문 : 불임

###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불 임

###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 6. 비용추계서 : 불 임

##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4. “총주차대수”란 「주차장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제외한 주차단위구획의 총수를 말한다.
5. “기축시설”이란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6. “공공기축시설”이란 기축시설 중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2호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을 “충전시설 및 그”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충전시설 설치대상)”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를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영 제18조의5”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를 “총주차대수 50개”로,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으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 1.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영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영 제18조의5제1항”을 “영 제18조의7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제1항 중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를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경우에는 소수점을” 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조제1호에 따른 시설에 충전시설을 5기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1기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2호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5기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충전시설” 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로, “시설의 경우” 를 “시설에 대해서도”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를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생략)  <u>&lt;신 설&gt;</u>	3. (현행과 같음)  4. “총주차대수”란 「주차장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 구획의 수를 제외한 주차단위 구획의 총수를 말한다.
<u>&lt;신 설&gt;</u>	5. “기축시설”이란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u>&lt;신 설&gt;</u>	6. “공공기축시설”이란 기축시설 중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

	<p><u>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u> <u>을 말한다.</u></p> <p>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u>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충전 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u> 또는 일부의 보조</li> <li>3. (생 략)</li> </ol> <p>제6조(<u>충전시설 설치대상</u>)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u>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u>을 갖춘 시설은 <u>전기자동차</u>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u>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균린생활시설</li> </ol>
	<p>제5조(예산지원)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충전시설 및 그</u> ----- ----- -----</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제6조(<u>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u>)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영 제18조의5----- ----- ----- <u>총주</u> <u>차대수 50개</u> ----- ----- <u>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u> <u>차구역</u>(이하 “전용주차구역” 이라 한다) 및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li> </ol>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

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생 략)

<신 설>

<삭 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7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영 제18조

의6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  
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  
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7조(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  
의 종류는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  
설로 한다.

②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 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 제8조(충전시설 설치 수량 등) ①

제8조(충전시설의 종류) ① -----  
----- 영 제18조의7제1항 각 호  
-----

② -----  
-----. 다만, 「주차장법」 제  
6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  
차의 전용주차구획 또는 「주택건  
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  
2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  
차구획이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  
다.

### 제9조(충전시설 설치 수량 등) ① -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신 설>

----- 해당 시  
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 다만, 기축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② 제6조제1호에 따른 시설에 충  
전시설을 5기 이상 설치하는 경우  
에는 1기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2호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5기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  
----- 경우 소수점 이하는 -----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  
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  
지 않은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  
치하지 않을 수 있다.

<p><u>제9조</u>(설치대상 외의 시설)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 여 제6조에서 정한 <u>충전시설</u>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u>시설의</u> <u>경우</u>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 고할 수 있다.</p> <p><u>제10조</u> (생 략)</p>	<p><u>제10조</u>(설치대상 외의 시설) -----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 설 ----- 시설에 대해서 도 ----- -.</p> <p><u>제11조</u> (현행 제10조와 같음)</p>
---	--

## 관련법령 발췌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 · 경유 · 액화석유가스 · 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

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8. 삭제
9. “수소연료공급시설” 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저장·운송·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기업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⑦ ~ ⑫ (생략)

#### 부칙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 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판매시설
  - 마. 운수시설
  - 바. 의료시설
  - 사. 교육연구시설
  - 아. 운동시설
  - 자. 업무시설
  - 차. 숙박시설
  - 카. 위락시설
  - 타. 자동차 관련 시설
  - 파. 방송통신시설
  - 하. 발전시설
  -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나. 기숙사
3.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⑥ ~ ⑦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32361호, 202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같은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18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기축시설: 1년  
    나. 가목 외의 시설: 2년
2. 제18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3년
3. 제18조의5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1년

#### 제3조(생략)

#### 제4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의 기준에 관한 특례 등)

- ① 시·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5의 개정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에 따라 조례로 정한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보며, 그 대상시설의 기준 중 총주차대수 및 아파트 세대수의 하한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1. 총주차대수의 하한: 50개
2. 아파트 세대수의 하한: 100세대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① 시 · 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제1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기축시설 외의 시설 및 공공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2.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① 시 · 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해당 조례가 제18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기축시설 외의 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2.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제7조(생략)**

##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 이란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부설주차장 :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 · 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 □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 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

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 개정 필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및 주차 편의성 제고 위해 기반시설 강화

### 2. 비용 발생 요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도색 비용 발생
- 충전시설 설치 비용 발생

### 3. 관련조문

- 안 제7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 안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 수량)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제정수반요인

- 도 본청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도색 및 충전시설 설치
  - \*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군 본청 중 의무설치 대상 및 공동주택 대상시설

#### 나. 추계의 전제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도색(500천원\*/면) \* 평균 견적 비용(300~700천원)
- 충전시설 설치(급속 : 40,000천원/대, 완속 : 4,000천원/대)

#### 다. 추계결과

-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 전용주차구역 도색(500천원 x 115면 = 57,500천원)

- 급속충전시설 설치(40,000천원 x 23기\* = 920,000천원)
  - \* 100kw 다채널 급속충전시설(2기 충전이 가능한 다채널 충전시설) 설치
- 시 · 군 본청
  - 전용주차구역 도색(500천원 x 142면 = 71,000천원)
  - 급속충전시설 설치(40,000천원 x 20기\* = 800,000천원)
    - \* 100kw 다채널 급속충전시설(2기 충전이 가능한 다채널 충전시설) 설치
- 공동주택 대상시설
  - 전용주차구역 도색(500천원 x 5,370면\* = 2,685,000천원)
  - 완속충전시설 설치(4,000천원 x 5,370기\* = 21,480,000천원)
    - \* 5,370기 = 268,500면\*\* x 0.02(기축시설 충전시설 설치비율)
    - \*\* 268,500면 = 250세대(100세대~499세대 평균치) x 2 (세대 당 평균주차면수)
      - x 537(증가한 설치 대상 단지)

#### 라. 재원조달방안

- 도 본청, 사업소 등
  - 전용주차구역 도색 : 도비 100%
  - 급속충전시설 설치 : 구축 및 운영 · 관리 비용 100% 환경부, 한전 부담
- 시 · 군 본청
  - 전용주차구역 도색 : 시 · 군비 100%
  - 급속충전시설 설치 : 구축 및 운영 · 관리 비용 100% 환경부, 한전 부담
- 공동주택 대상시설
  - 전용주차구역 도색 : 민간자본
  - 완속충전시설 설치 : 민간자본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불임

#### 6. 작성자 :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 연도별 비용추계서 〉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세 입 -	-	-	-	-	-
세 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도색	57,500	57,500	-	-	-
재원 조달	1,848,500	1,848,500	-	-	-
급속 충전시설 설치	국비	1,720,000	1,720,000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도색	도비	57,500	57,500	-	-
	시군비	71,000	71,000	-	-
기 타 (민간자본)	24,165,000	6,041,250	6,041,250	6,041,250	6,041,250